

# 입찰공고(안)

##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입찰명 : "균형발전현황판 운영장비 임차 및 유지보수 용역"

나. 입찰일정

| 구 분  |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마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찰일시                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일 시  | 2022.12.19(월) 11:00 까지                     | 2022.12.19.(월) 14:00 |
| 접수방법 |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접수 및 가격 투찰<br>(e-발주시스템 서류 등록) |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입찰참가자격

가.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(이하 "국가계약법") 시행령 제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

나.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

## 3. 입찰보증금 : 입찰금액의 2.5/100 이상(현금,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)

가.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

나.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, 본 평가관리원에 귀속됨

## 4.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: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("국가계약법" 시행 제43조 및 평가관리원 계약규칙 제49조, 비예가)

## 5. 용역의 착수, 완료일 : 계약체결일로부터 ~ 12개월 이내

## 6. 계약조건 공시 장소 : 본 평가관리원 동반성장팀 및 홈페이지(www.keit.re.kr) 참조

## 7. 입찰의 무효 : "국가계약법"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

## 8. 입찰참가 신청서류

- 입찰참가신청서 (당 원 양식)
- 법인등기부등본
- 법인(개인)인감증명서(필요시 사용인감계)
-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(해당 경우)
- 청렴계약특별유의서
- 실적증명서 각 1부
- 제안서
- 입찰보증금(보증보험증권)
- 사업자등록증
- 입찰유의서
- 가격산출내역서
-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

## 9. 협력이익공유제·성과공유제 시행 안내

가. 본 계약 관련하여 위·수탁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후 별도의 협력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이 추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협력이익공유제·성과공유제란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활동을 하여 달성한 성과 또는 이익에 대해 사전에 상호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.

## 10. 기타사항

가. 입찰자는 본 평가관리원의 입찰유의서, 계약일반조건,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

나.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균형발전평가센터(042-712-9256, 이규동 수석)으로,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(053-718-8275, 윤수혁 전임)으로 문의할 것.

다.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, 본 평가관리원은 책임지지 않음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2일

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

## [참고]

### 1. 협력이익공유제(www.winplus.or.kr)

#### ■ 협력이익공유제 정의

대기업과 중소기업 간, 중소기업 상호 간, 위탁·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 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

#### 협력관계

이익공유 대상에 위·수탁기업 관계뿐만 아니라, 상생협력 활동의 대상이 되는 대·중소기업간, 중소기업간 등을 모두 포함  
- 성과공유제는 위·수탁기업간 거래만 해당(유통업, IT플랫폼 등의 반영에 한계)

#### 협력이익

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협력이익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'재무적 성과'로 한정  
- 협의(狹義)의 협력이익  
공동의 노력을 통해 특정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이익  
- 광의(廣義)의 협력이익  
일반적인 대·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협력사의 기여를 통해 달성한 이익  
대기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성과급 등을 포함

#### 공유방식

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위탁기업의 재무적 성과(판매량, 영업이익 등)와 연계하여 이익을 공유  
- 공유범위는 프로젝트, 개별기업, 물품·부품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 선택

#### 사전약정

수탁기업 등의 혁신노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사전계약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

협력이익공유제\*는 중소기업과 협력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게  
정부에서 세제 등의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.

기업(또는 주주)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며,  
R&D투자 등에 협력사가 기여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.

### 2. 성과공유제(www.benis.or.kr)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·위탁기업간의 합리적인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·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.

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, 수탁·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.



세 가지 요건 충족시, 모두 성과공유제에 포함



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. 객관적 실적 측정·평가 등이 가능토록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제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인센티브의 증빙 서류 및 실적점검에 활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